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61

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개호・김현정

양부남 • 김문수 • 김동아

박지원 · 문정복 · 소병훈

이성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에 따르면,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 내 선고해야 하나, 일정이나 방식, 순서,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이 없습니다.

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.

이에,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,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(先入先出)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 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(안 제35조, 제38조의2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"평의의 정리(整理)"를 "평의의 진행·정리(整理)"로 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심리의 순서)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판의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심판사건의 중대성·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평의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평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심리의 순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된 심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	제35조(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
권)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	권) ①
서와 변론의 지휘 및 <u>평의의</u>	<u></u> 평의의 진
<u>정리(整理)</u> 를 담당한다.	<u>행・정리(整理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38조의2(심리의 순서) 헌법재판
	소는 심판사건을 제2조 각 호
	의 구분에 따른 심판의 종류별
	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심리하
	여야 한다. 다만, 심판사건의
	중대성・긴급성 등을 고려하여
	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	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